

회원관리 및 회비 등 납부 운영 규정

2009년 9월 25일 제정

2010년 1월 30일 개정

제1조 (목적)

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(이하 '학회') 정관 제11조에 근거하여 회원의 회비 납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회비의 액수 및 납부기한)

- ① 상임이사회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회비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② 영구회비는 일반 회비의 10년분 금액으로 한다.
- ③ 회비의 납부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 (회비 납부 안내 및 회원관리)

- ① 사무국은 매년 정기총회 직후 1개월 이내에 전 회원에게 당해 연도 회비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.
- ② 사무국은 3년분 이상 회비 미납자를 보류회원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.
- ③ 사무국은 회원 회비 납부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 (권리의 행사)

- ① 학회비를 완납한 회원만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법학회논총에 논문을 게재할 권리를 가진다.
- ② 학회비를 완납한 회원만이 총회에서 임원 선거권을 가진다.
- ③ 사무국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30일 이전에 선거권자 명부를 작성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한편, 이를 각 선거권자에게 통보한다.

제5조 (회비 납부의 대체 및 면제)

- ① 동일 회계연도 300만원 이상 경상운영비 기부자는 당해연도의 회비 및 영구회비 납부자로 처리한다.
- ② 동일 회계연도 100만원 이상 경상운영비 기부자는 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로 처리한다.
- ③ 만 65세 이상의 명예이사 또는 학회 가입경력 10년 이상으로 만 65세 이상인 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.
- ④ 당연직 일반이사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동안 회비납부가 면제된다. 다만 해당 직위를 그만둔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회원으로 잔류 또는 탈퇴를 선택할 수 있고, 잔류하는 경우에는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

한다.

⑤ 사무국은 당연직 일반이사 선임 통보시 전항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.

제6조 (용도지정 기부금)

기부자가 목적을 지정하여 원금 보존의 조건으로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본 규정 제4조의 학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라 함은, 2009년도 이사의 경우 2007년 이후 회비 완납자, 현 평의원의 경우 2008년 이후 회비 완납자, 일반회원의 경우 2009년 이후 회비 완납자를 의미한다. 2009년에 평의원에서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2007-8년 평의원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.

제3조 본 규정 제5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기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